

## 의류제품의 치수 규격동향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소 한상미  
02) 509-7240 hsm@ats.go.kr

### I. 서론

의복의 치수 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옷의 종류에 따라 기본이 되는 인체의 부위를 정하고, 그 기본 부위 간의 모집단의 분포상태를 예측하여 변이의 본질을 정의하고, 한 치수에서 다음 치수로 차별화(differentiation)해 가는 증가적 변이(incremental variation)와 체형을 조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인체는 종적 항목인 높이 항목과 길이 항목, 횡적 항목인 둘레 항목, 두께 항목, 너비 항목 등의 다차원적인 요소들이 복합되어 곡면체를 이루면서 독특한 개인의 체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의복치수 규격이 체형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방법론이 실증적 자료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인체치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복의 치수규격을 보완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0년 이후 의류치수규격을 개발하면서 의류제품에서 품질표시의 주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자, 유통자, 사용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한 국산업규격상의 치수호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표시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한 의류치수 호칭법의 변화 및 현행 규정에 대하여 소개 함으로 의류제품의 올바른 호칭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표준규격(ISO)의 의류치수 호칭고찰 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의류제품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류제품의 치수규격 개정 방 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I. 국내 의류제품의 치수규격 동향

현행 KS 규격에는 복종에 따라 “KS K 0050 남 성복의 치수”, “KS K 0051 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0055 노년여성을 위한 여성복의 치수”,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9 모자의 치수”, “KS K 0070 브래지어 의 치수”, “KS K 0088 양말의 치수”의 8개 의류제 품 치수 규격을 운용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여성복 및 남성복을 위주로 치수규격의 개정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 1. 여성복

1979년에 시행된 제1차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에

의하여 1981년 의복, 신발류 등 46개의 공산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게 되었고, 기성신사복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신체호칭과 신체치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복의 경우 15종의 호칭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1986년에 실행된 제 2 차 국민표준체위조사결과를 반영한 규격 제정이 1987년 이루어져 여성복 외의류의 경우 22개로 호칭이 추가되었다(KS K 0066~69, 1987). 일차 발표때의 호칭은 신체 각 부위의 평균치수를 "5"라는 기호로 설정하였으며 의복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여성복 상의는 "키-가슴둘레"를 의복구성요소로 하여 "55"가 평균에 해당하는 중심치수가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1980년 당시 평균치로서 키 155cm, 가슴둘레 85cm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복호수이다. 여기에 키는 5cm, 가슴둘레는 3cm로 등간을 두어 호수를 조합하도록 하였다.

1990년에는 41개의 의류치수 규격에 대한 호칭 및 치수규격의 단순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1990년에 개정된 여성복을 위한 의복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치수(KS K 0050~90) 호칭(55호, 66호, ...)은 사이즈의 개념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ISO와의 규격 통일을 위하여, 기호에 의한 호칭을 배제하고 직접 신체치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복 종류와 구성에 따른 요소에서 길이항목보다 둘레항목에 우선성을 두었다.

예를 들면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여성복 상의는 "가슴둘레-영덩이둘레-키"로 바뀌어 표기법이 예를 들면 "85-90-155"호로 되었으며 이것은 일차호칭의 "55"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슴둘레, 영덩이둘레, 키의 등간은 각각 3cm, 2cm, 5cm로 하였다.

1992년에 시행된 제3차 국민표준체위조사 결과가 반영된 KS K 0051~94는 KS K 0050~90과 차이가 없다.

1999년에 개정된 의류치수와 관련된 KS규격은 종래의 규격과 달리 여성복과 남성복 치수에 체형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에 개정된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여성복 치수규격에는 여성의 체형에 드롭치수(영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를 적용하였으며 X type을 보통체형으로 하고 가슴과 영덩이둘레의 차이가 큰 A type, 가슴과 영덩이 둘레가 거의 같은 H type 으로 하여 3가지 체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현행 KS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치수 표시법은 복종에 따라 규정된 기본 신체치수를 나열하며 체형구분을 약자로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 예를 표1~표3에 나타낸다.

표 1 여성복 상의의 호칭 및 호칭의 예

호칭	대용신체치수			체형
	가슴둘레	영덩이둘레	신장	
82-90(N)-160	82	90	160~164	N
85-92(N)-160	85	92	160~164	N
88-94(N)-160	88	94	160~164	N
91-96(N)-160	91	96	160~164	N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호칭 85-92(N)-160	
신체치수	
가슴둘레	85cm
영덩이 둘레	92cm
신장	160~164cm
제조원	○○상사
☎	02) 500-7000

표 2 여성복 하의의 호칭 및 호칭의 예

호칭	대응신체치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	∴	∴
67-92	82	90
70-96	85	92
73-98	88	94
76-100	91	96
∴	∴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호칭 67-92	
신체치수	
허리둘레	67cm
엉덩이둘레	92cm
제조원	○○상사
☎	(02) 500-7000

표 3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의류의 품목별 호칭 및 신체치수

품목	호칭	신체치수		
		가슴둘레/ 허리둘레	신장	
점퍼	90	90	155~165	
	95	95	160~170	
	100	100	165~175	
와이셔츠 스웨터 티셔츠 베스트	90	90		
	95	95		
운동복 조깅복	상의	90	90	155~165
		95	95	160~170
		100	100	165~175
	하의	70	70	155~165
		75	75	160~170
		80	80	165~175
원피스	90	90	155~165	
	95	95	160~170	
	100	100	165~175	

## 2. 남성복

남성복의 경우도 여성복과 같이 1980년 41개의 다양한 의류제품별 호칭에서 1990년 남성복의 치수 규격의 제정으로 단순화되면서 현행 남성복의 치수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산업규격(KS)의 남성복 치수규격(KS K 0050: 1999)을 살펴 보면, 적용범위는 유아복 및 정장용 드레스 셔츠를 제외한 성인남성 및 청소년의 의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복종류별로 의류치수에 기본이 되는 기본 신체부위와 적용하는 신체치수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 신체부위별 신체치수는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피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슴둘레는 78cm 보다 작은 치수는 4cm 간격으로, 78cm보다 큰 치수는 2cm 간격으로 연속하고, 허리둘레는 2cm, 엉덩이둘레는 3cm, 신장은 5cm 간격으로 연속하고, 피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및 신장 모두 5cm 간격으로 연속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표 4>과 같이 성인남성의 체형을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치수차이, 즉 drop값을 적용하여 마른체형(YY type), 역삼각체형(Y type), 표준체형(X type), 허리가 굽은 체형(B type), 배가 나온 체형(BB type)의 5가지로 분류하고, 신장을 다시 작은키(Petite), 보통키(Regular), 큰키(Tall)의 3개로 나누어 적절하게 조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표 36> KS 한국 성인 남성의 체형분류

체형 \ 키	petite 155-165cm	regular 165-175cm	tall 175-185cm
YY type: 마른체형 (Drop치 22-28cm)	drop치 22cm의 체형	drop치 24cm의 체형	drop치 28cm의 체형
Y type: 역삼각체형 (Drop치 18-22cm)	drop치 18cm의 체형	drop치 20cm의 체형	drop치 22cm의 체형
A type: 보통체형 (Drop치 14-18cm)	drop치 14cm의 체형	drop치 16cm의 체형	drop치 18cm의 체형
B type: 허리가 굽은 체형 (Drop치 10-14cm)	drop치 10cm의 체형	drop치 12cm의 체형	drop치 14cm의 체형
BB type: 배가 나온 체형 (Drop치 6-10cm)	drop치 6cm의 체형	drop치 10cm의 체형	drop치 12cm의 체형

### III. 의류업체의 의류치수규격 사용현황

의류업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체형특성을 적절하게 반영시킨 치수규격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생산의 효율성 때문에 기성복은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만큼 다양한 치수를 생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정이나 수선없이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시판되고 있는 의류제품의 경우 범국민적인 표준체위조사에 의한 과학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업체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으로 만든 치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규격과 치수분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류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복 업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숙녀복의 경우 경쟁브랜드의 치수를 참고로 하여 치수를 설정하

고 있었고, 마담존 여성복은 KS 규격을 참고하여 치수를 설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본 신체치수도 숙녀복은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마담존 여성복은 KS 규격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KS 치수규격의 호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미비하였다. 이는 숙녀복의 경우 타겟으로 하는 연령과 체형이 업체마다 특화되어 있고 구매층 또한 우리나라 평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KS 규격내에 있는 기본 신체치수보다 매장에서 실제 구매자로부터 얻은 자료들이 유용한 것으로 업체들이 판단하고 있었다. 마담존 여성복 제조업체의 경우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착용 습성이 좀더 여유 있는 옷을 선호하므로 KS 규격에서 제공하는 기본신체치수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부류의 모든 업체에서 KS 규격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칭에 대해서는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KS 호칭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구호칭에 기인한 44, 55, 66 등의 호칭 전개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수는 KS 치수 규격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신체치수 항목, 치수 간격 등 전반적인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복의 체형구분이 필요한지 여부와 드롭치에 따른 구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복에 체형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체형 구분시에는 KS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드롭치로 체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복의 경우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KS 규격에서는 신사복의 가슴둘레, 허리둘레를 100cm 기준으로 2cm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대부분 3cm 간격을 사용하고 있었다. 업체중에서는 M사가 가장 많은 26개 치수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들은 10~13개 치수를 생산하고 있었다. 업체에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의 드롭치를 KS의 체형구분과 비교한 결과, S사는 드롭치가 12인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KS의 B타입(허리가 굽은 체형)에 해당한다. L사는 드롭치가 9인 S(KS의 BB:배가 나온 체형), 12인 R(KS의 B:허리가 굽은 체형), 15인 L(KS의 A:보통체형)로 구분하여 생산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R 치수가 많았다. B사는 대부분 드롭치가 12이었으며, P사의 경우에는 작은 신장에서는 드롭치 15, 큰 신장에서는 드롭치 12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M사의 경우에는 치수 대부분의 드롭치가 12(KS의 B 체형)였으나 각 신장에서 드롭치가 9나 15인 것도 있었다. KS에서 보통체형 A는 드롭치가

14~18cm인것과 비교하면 업체들이 허리가 굽은 체형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업체의 하의 생산치수는 P사를 제외한 4개 업체가 허리둘레는 KS 규격과 일치하도록 2cm 간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엉덩이둘레는 3cm 간격(KS는 2cm)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S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엉덩이둘레를 3cm 간격으로 하되 91~100사이에서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편차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치수가 생산 아이템별로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자사의 아이템별 치수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KS 내의 치수보다 자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수표준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KS 의류치수 규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남성복 제조업체의 경우 전통적으로 KS 규격이 규정하고 있는 호칭 표시법의 반영이 우수한 반응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99년 개정 KS 호칭법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4개 업체 모두가 남성복의 개정된 호칭법을 알고 있었으나 그중 2개 업체만이 개정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개정된 호칭을 몰라서이거나 소량생산으로 체형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 IV. 국제규격(ISO)에서의 의류치수

##### 1. 여성복

ISO에서는 적용범위, 옷의 종류, 체형의 기준 등이

한국산업규격에서와는 달리 정의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인종을 상대로 국제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는 ISO 입장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규격을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세계 각국들도 ISO의 무조건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국민의 체형을 대표하는 의류치수 규격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ISO 치수규격(ISO/TR 10652 : 1991)에서는 키의 성장이 완료된 여자를 성인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인 여성복 사이즈 체계는 여성의 체형을 드롭에 따라 엉덩이둘레가 큰 A 체형(drop 12), 표준인 M 체형(drop 6), 엉덩이둘레가 작은 H 체형(drop 0)으로 분류하였고, 각 체형별로 다시 작은키(160cm), 보통키(168cm), 큰키(176cm)의 3그룹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조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기본 부위는 가슴둘레(bust girth), 엉덩이둘레(hip girth), 신장(height)으로 되어 있으며,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간격치수는 4cm이고 신장의 간격치수는 8cm로 정의하고 있다.

표 5에 우리나라 20대 전반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ISO 사이즈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37 ISO 성인 여성의 사이즈 체계 (ISO/TR 10652 : 1991)

신체치수 체형구분	기본 부위		참고 부위								
	가슴둘레	신장	신장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바지길이
A 체형 (large hip)	80	94	94	69	68	39	41	58	60	102	107
	84	98	98	73	72	39	41	58	60	102	108
	88	103	103	77	76	39	41	58	60	102	108
	92	106	106	81	80	40	41	58	60	103	108
M 체형 (medium hip)	80	87	87	63	63	39	41	58	60	101	106
	84	92	92	69	67	39	41	58	60	101	106
	88	96	96	74	72	39	41	58	60	101	106
	92	99	99	79	77	40	41	58	60	101	106

## 2. 남성복

ISO의 치수 체계(ISO/TR 10652 : 1991)에서 남성복은 체형을 가슴둘레에서 허리둘레를 뺀 드롭치에 따라 5개 유형으로 체형을 구분하고 있다. <표 6>는 ISO에 의한 체형 분류이다.

<표 38> ISO에 의한 체형의 분류

체형	약호	드롭치
스포츠맨형(athletic)	A	16
표준형(regular)	R	12
통통한형(portly)	P	6
딱바라진형(stout)	S	0
비만형(corpulent)	C	-6

성인남성의 각 체형별 가슴둘레-신장-허리둘레의 신체치수 분포는 <표 9>와 같다. 5체형별로 신장은 164cm부터 188cm 사이를 6cm간격 5그룹, 가슴둘레는 84cm부터 116cm 사이를 4cm간격 9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165개 사이즈를 제시하고, 각 가슴둘레-신장 그룹간 기본 허리둘레 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체형에 따라서 가슴둘레가 일정하더라도 허리둘레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장 170cm, 가슴둘레 104cm인 경우 체형 A(스포츠맨형)는 허리둘레가 88cm, 체형 R(표준형)은 허리둘레가 92cm, 체형 P(통통한형)는 100cm, 체형 S(딱바라진형)는 104cm, 그리고 체형 C(비만형)는 110cm이다.

<표 39> ISO 남성복 신체치수 분류표  
(ISO TR 10652:1991)

체형	가슴 둘레	신 장				
		164	170	176	182	188
		허 리 둘 레				
A	84	-	-	-	-	-
	88	·	·	68	·	·
	112	·	96	96	96	96
	116	-	102	102	102	102
R	84	68	68	68	-	-
	88	74	74	74	74	·
	112	·	104	104	104	104
	116	-	108	108	108	108
P	84	74	74	74	74	74
	88	80	80	80	80	80
	112	·	108	108	108	108
	116	-	-	114	114	-
S	84	-	80	80	80	-
	88	84	84	84	84	84
	112	·	112	112	112	112
	116	-	-	116	-	-
C	84	-	-	-	86	-
	88	·	92	·	92	·
	112	·	·	120	·	·
	116	-	-	-	-	-

NOTE-There 165 sizes accommodate approximately 80% of the population

## V. 결론

KS 의류치수 관련 규격은 1979년 제1차 국민표준 체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류, 신발류, 교가류 등 46개 공산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의류 전품목에 대하여 41개의 KS 한국공업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1990년, 1994년, 1999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1999년 4차의 의류치수규격의 개정에서는 ISO 부

합화 차원에서 체형구분을 규격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반적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ISO 부합화,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 및 제조업자의 활용도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현행 KS나 ISO와 같이 기본신체치수의 정보를 호칭표시로 사용하는 경우 무수히 많은 치수개발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기성복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제조업자에 입장에서는 다양한 치수전개에서 오는 제조단가 상승 및 재고의 부담으로 단순화한 특정 치수만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신체치수 나열식의 호칭표기법은 사용자의 이해도만 저하시킬 뿐 유통과정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보다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호칭표시법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류제품의 제조과정 및 맞춤성 평가의 기본 자료인 기본 신체치수를 제공하는 규격과 호칭표시법을 제공하는 규격으로 구분하여 규격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의류제조업체에서는 기본 신체치수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규격을 참조하여 각 업체의 전략에 부합하는 사이즈체계를 전개하고, 소비자는 보다 알기 쉽게 규정된 호칭표시법 규격을 참조하여 의류선택에 접근한다면 통일된 의류호칭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칭 표시법을 명시하는 규격에 있어서도 정의, 품종, 호칭법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호칭표시법 또한 업계의 제조현황을 고려한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